

### 공급개요

- 공급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89번지 일원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공급 규모: 지하3층 ~ 지상 22층, 8개동 총 672세대 중 일반분양 307세대 (일반 기관추천 29세대 포함)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구분		59A	73A	73B	73C	84A	84B	합계
장애인	서울시	3 (15)	1 (5)	-	-	-	1 (5)	5 (25)
	경기도	1 (5)	-	-	-	1 (5)	1 (5)	3 (15)
	인천시	1 (5)	-	-	1 (5)	-	1 (5)	3 (15)
국가보훈처 추천		3 (15)	-	-	-	-	1 (5)	4 (2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20)	-	-	-	1 (5)	1 (5)	6 (30)
우수선수		1 (5)	-	-	1 (5)	-	-	2 (10)
중소기업 근로자		2 (10)	1 (5)	1 (5)	-	1 (5)	1 (5)	6 (30)
계		15 (75)	2 (10)	1 (5)	2 (10)	3 (15)	6 (30)	29 (145)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정

-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접수일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0.08.03 (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MC센트럴자이 홈페이지 (www.xi.co.kr/s7)</li> <li>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ul>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2020.08.03 (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자이 카카오톡 채널 및 관심고객 등록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li> </ul>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0.08.13 (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8:00~17:30)</li> <li>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10:00 ~ 14:00)</li> <li>-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인터넷 청약 권장)</li> <li>- 구비서류: 자격확인 서류 지참 또는 청약자 본인 공인인증서</li> </ul>
당첨자 발표	2020.08.26 (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홈페이지 게재 (www.xi.co.kr),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ul>

-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자격확인 서류) 지참 시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14:00)가 허용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 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신청 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당사가 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조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li> <li>•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li> <li>•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li> <li>•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한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합니다.</li> <li>[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보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li> <li>① 청약예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부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b>청약예금의 예치금액</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 이상</td> <td>250만원 이상</td> <td>200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li> </ul>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거주요건 등의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li> <li>• 해당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신청일에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ul>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한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li> <li>•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 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 세대 및 장애인 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li> <li>• 신청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승인 이후 견본주택, 당사 홈페이지(www.xi.co.kr/s7)상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계층 특별공급 대상자 중 견본주택 방문 청약 접수 시 아래 서류 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 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추가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세 " 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서류는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 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3-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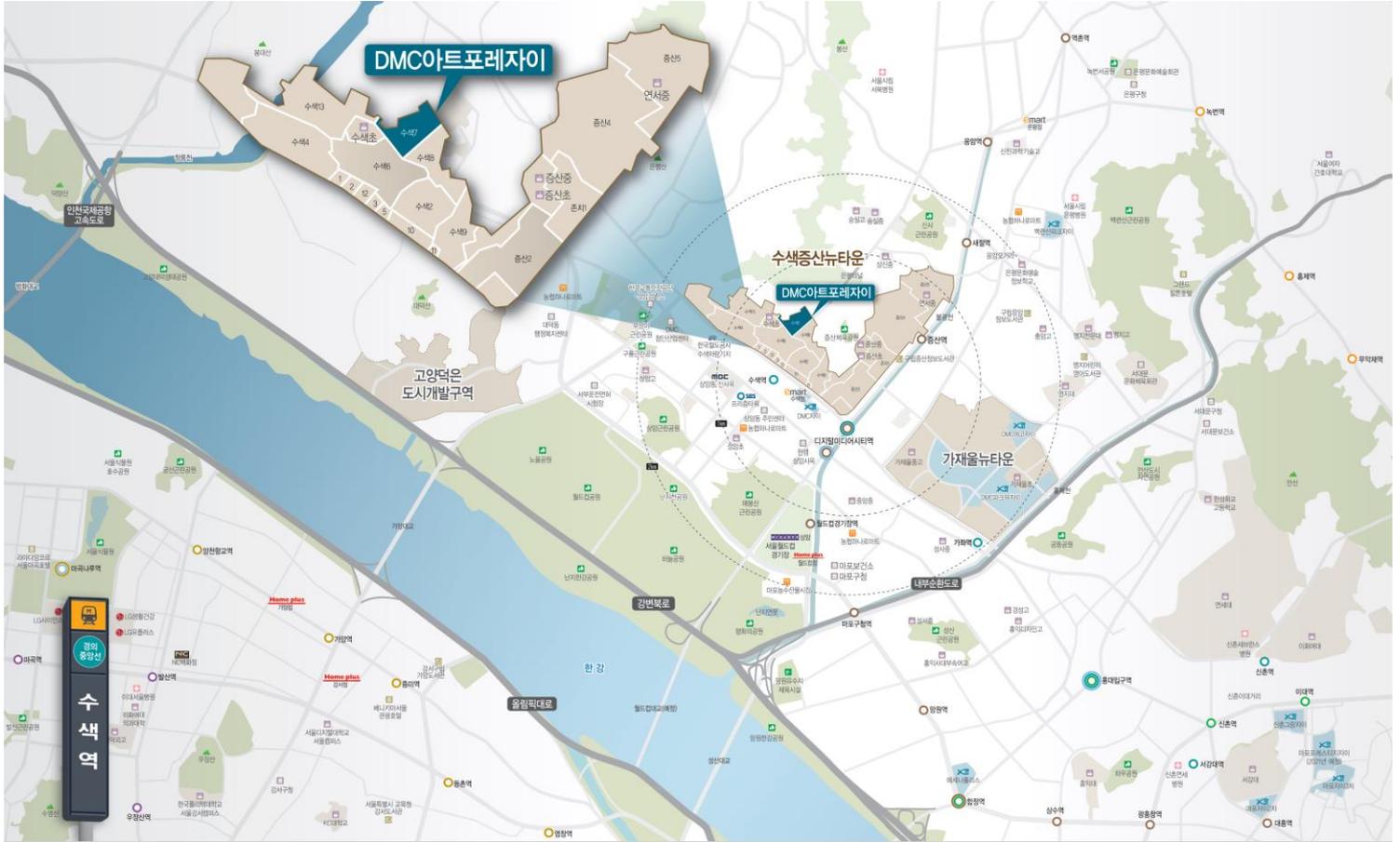
총 672세대 중  
일반분양 307세대  
(전용 59㎡, 73㎡, 84㎡)

홈페이지 주소:  
[www.xi.co.kr/s7](http://www.xi.co.kr/s7)

시행: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및 관람은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기간이와는 관람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MC아트포레자이 입지환경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 및 인·하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ED PREMIUM

##### 도심 전역이 빨라지는 교통의 중심

- 수색역이 인접하고 근거리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위치한 **교통특구**
-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월드컵대교(계통예정)가 인접한 **편리한 입지여건**

#### LIFE & NATURE PREMIUM

##### 생활인프라와 자연이 만나는 주거특구

-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월드컵경기장 등 **다양한 편의와 문화시설을 갖춘 생활특권**
- 봉산자연도시공원, 월드컵공원, 한강공원, 불광천 등을 누리는 **친환경 특구**
- 도심의 활력과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업업무지구 인접**

#### EDUCATION PREMIUM

##### 초등학교를 품은 우수한 교육환경

- 단지 근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가 편리한 교육특구**
- **단지 옆에 수색초가 자리잡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보 통학이 가능**

#### VISION PREMIUM

#####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미래가치

- 자이브랜드타운으로 급부상할 수색중신뉴타운과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예정), 상암 롯데복합쇼핑몰(예정)을 다 누리는 **프리미엄1번지**
- 수색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통해 업무·판매시설 등 **복합시설과**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 상기 현황 및 개발 계획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색중신뉴타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8호
-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예정) : 코레일 홈페이지 「수색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